제83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건설중이거나 기능이 폐지된 해양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의무(신설) - 건설 중 공사 중지된 해양구조물이 항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거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- 기능이 폐지되었으나 철거되지 않은 해양구조물에 대하여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*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1조	1.비중요
2	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교육·훈련 세부 운영방법(신설) - 교육·훈련의 대상* 및 내용** (총 24시간 이상) 규정 * 1차,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- (제외)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,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** 이론 및 법률(6시간 이상), 실무(8시간 이상), 위험물질 안전관리 기술(10시간 이상) *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,제8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위치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 세부기준(신설) - ▲위치정보관리책임자* 지정 ▲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▲취급·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▲취급대장 운영·관리 ▲정기 자체검사 * 위치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 *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7조,제3조 제4조제5조제6조 2.위치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 세부기준(신설) - (기술적 조치) ▲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·인증 ▲방화벽 설치 ▲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·보존 장치 운영 ▲보안프로그램 설치·운영 ▲암호화 등 의무 *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2조,제8조 제9조제10조제11조	1.비중요 2.비중요
4	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시정명령 공표 이행결과 보고 의무(강화) -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 공표 방법별* 이행결과 제출·보고 의무 신설 * ① 신문, 잡지 등 공표 ② 사업장,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 ③ 인터넷 등 온라인 공표 ④ 우편에 의한 고지 *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21조,제10조제16조제18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산림청)	1.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추가(강화) -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교육과정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추가 마련 *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	1.비중요
6	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산림청)	1.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행정처분 사유 추가(강화) -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에 “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양성과정 부실운영”을 추가 *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2.숲속야영장 체험·교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(강화) - 숲속야영장 체험·교육 시설 내에 ‘숙박시설 설치 금지’ 명문화 *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3.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(강화) - 자연휴양림등에 지정된 장소 이외 장소에서 ‘야영 및 차박 행위 금지’ 명문화 *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(신설) -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배관의 구조 및 시험기준 규정 - (제3조제1항제4호) 재료 구성기준 신설 - (제5조제2항) 인장강도 시험방법 추가 - (제6조제3항) 내압시험 규정 - (제7조제4항) 압력손실시험 규정 - (제14조의2) 조립시험 대상 명확화 및 제조자가 제시하는 조립방식 추가 - (제16조의2) 당김시험 신설 - (제16조의3) 편평시험 신설 *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,제5조제6조제7조제14조의2제16조의2제16조의3	1.비중요